

## 경운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직과정)*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설치학과 및 정원)**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과)·전공 및 승인정원은 교육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한다.

**제4조(위원회 구성)** 교원자격검정 및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.

**제5조(교원양성위원회 구성)**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② 본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. <개정 2021.10.01.>

③ 본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6조(교원양성위원회 기능)**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.

1. 교직과정 신규 개설 및 폐지에 대한 심의
2. 교직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심의
3.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에 대한 심의
4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심의
5. 교직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심의 및 확정
6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이수신청)**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학년 제1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수예정자 선정)** 제7조의 신청자중 교직관과 국가관이 뚜렷하고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로서 학부(과)·전공 성적 순위 및 인·적성 검사 및 면접을 통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정하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교육실습)** ①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 내에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)**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직과정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서류를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운영)**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할 수 있다.

**제12조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,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,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및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따른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